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18. 11. .
발 의 자	장미경의원 외 7명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미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장미경 · 강승수 · 김낙관 · 김재우
김춘남 · 김택호 · 신문식 · 안주찬
의원(8인)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써 심야·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전개하여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자율방범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지원으로써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연합대 조직 및 구성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방범대 및 연합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방범대 및 연합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방범대 및 연합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방범대 및 연합대의 행정지도, 감독과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방범대 및 방범대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의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전개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면·동에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면·동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구성한다.

1. 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한다. 다만, 방범활동 구역, 거리, 성별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방범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임무) ① 방법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棄兒)·가출인의 보호 활동
3.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6.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방범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연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 주관
2.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3. 방법대의 활동 지원 및 지도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할 지구대(파출소) 또는 읍·면·동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법대로서 방범활동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법대 및 연합대로 한다.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법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등 소모성 장비 구입비
2. 야식비 및 피복비
3. 범죄예방 및 안전실천을 위한 결의대회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방법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법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방법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지역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방법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법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방법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법대 및 방법대원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조례안 제6조에 규정한 경비의 지출(세출)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자율방범대원 1인당 月 10천원의 범위에서의 실비(급식비, 간식비, 유류비 등)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계한다.
- 소모성장비구입비 및 방범초소 도색비는 年 15,000천원 범위에서 읍면동(자율방범대) 단위로 순차 추계한다.
- 결의대회 예산은 年 15,000천원 범위에서 연합대의 규모(대원수)에 비례하여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해당없음						
	소계(a)						
세출	◦실비지원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850,000
	◦장비구입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결의대회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소계(b)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 총 비용(a-b)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민 간						
기 타						
합 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5. 부대의견 : 의견없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총무과 조용경
연락처	054-480-675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 170,000천원
 - 예산편성 : 읍·면·동
 - 산출기초 : 10,000원 × 1,416명 정도 × 12월 = 170,000천원
- 소모성 장비구입비 및 방법초소 도색비 : 15,000천원
 - 예산편성 : 총무과
 - 산출기초 : 3,000,000원 × 5개대 = 15,000천원
- 연합회 결의대회 지원 : 15,000천원
 - 예산편성 : 총무과
 - 산출기초 : 10,000,000원 × 1개대 = 10,000천원
5,000,000원 × 1개대 = 5,000천원